

작성방법

1. "① 동거기간"란은 해당 동거주택의 취득일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적습니다. 다만,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. ※ 예시) 10년 5개월
2. "② 평가가액"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3. "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"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√ 표시를 적습니다.
4. "④ 예외유형"란은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.

①	②	③	④	⑤	⑥	⑦	⑧
일시적 2주택	혼인합가주택	문화재주택	이농주택	귀농주택	동거봉양	피상속인 혼인 합가주택	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

5. "⑧ 요건충족 지분"란은 "⑥ 10년 이상 동거"와 "⑦ 무주택자"를 모두 충족한 "⑤ 동거주택지분"을 적습니다.
6. "⑨ 계"란은 "⑧ 요건충족 지분"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.
7. "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"란은 "② 평가가액"에 "⑧ 요건충족 지분"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8. "⑫ 동거주택 상속공제액"란은 "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"과 "⑪ 한도금액"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